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29 선고 2024가단291972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김성희, 이병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8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24. 8. 3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8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(인정근거)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)

판사 김성대

별지